

[공모펀드 변경안내]

가. 펀드명 : 유진 챔피언 단기채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

나. 효력발생일 : 2017년 12월 15일(금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주요 변경내용 :

- 1) 투자위험등급 변경(변동성 기준 및 6등급으로 변경)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						
요약정보								
투자위험등급	5등급(낮은 위험)	6등급(매우 낮은 위험)						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중 (2)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	<p>3. 투자위험 등급 분류</p> <p>투자위험등급 : 5등급(낮은 위험)</p> <p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저위험자산에 투자하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5등급(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이자소득 및 자본차익을 추구하며 어음 및 채권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</p> <p><u>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예: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)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3. 투자위험 등급 분류</p> <p>투자위험등급 :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</p> <p>이 투자신탁은 <u>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저위험자산(전자단기사채 및 어음)에 투자하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</u>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이자소득 및 자본차익을 추구하며, 어음 및 채권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</p> <p>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0.1007%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			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(신 설)	1) 투자위험등급 변경(변동성 기준 및 6등급으로 변경)			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투자대상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투자비율</td> <td style="width: 80%;">투자대상 세부내용</td> </tr> </table>	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세부내용	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투자대상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투자비율</td> <td style="width: 80%;">투자대상 세부내용</td> </tr> </table>	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세부내용
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세부내용						
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세부내용						
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④신탁 수익증 권</td> <td>40 %이 하</td> <td>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 익증권,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. 불특정 금전신탁 제외</td> </tr> <tr> <td>⑤집합 투자증 권</td> <td>40 %이 하</td> <td>법 제9조제21항의 규 정에 의한 집합투자증 권. 다만, 채권형 집 합투자증권에 한한다.</td> </tr> </table> <p>※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 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④~⑨ 및 투자제한 ②~③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	④신탁 수익증 권	40 %이 하	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 익증권,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. 불특정 금전신탁 제외	⑤집합 투자증 권	40 %이 하	법 제9조제21항의 규 정에 의한 집합투자증 권. 다만, 채권형 집 합투자증권에 한한다.	<table border="1"> <tr> <td>④집합 투자증 권</td> <td>40 %이 하</td> <td>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 익증권, 법 제9조제 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(주식관 련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, 이 하 “집합투자증권 등” 이라 한다)</td> </tr> </table> <p>※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 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④~⑧ 및 투자제한 ②~③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	④집합 투자증 권	40 %이 하	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 익증권, 법 제9조제 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(주식관 련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, 이 하 “집합투자증권 등” 이라 한다)
④신탁 수익증 권	40 %이 하	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 익증권,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. 불특정 금전신탁 제외									
⑤집합 투자증 권	40 %이 하	법 제9조제21항의 규 정에 의한 집합투자증 권. 다만, 채권형 집 합투자증권에 한한다.									
④집합 투자증 권	40 %이 하	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 익증권, 법 제9조제 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(주식관 련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, 이 하 “집합투자증권 등” 이라 한다)									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위험</p>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5등급 : 낮은 위험</p> <p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 을 저위험자산에 투자하므로 6개의 투 자위험등급 중 5등급(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이 자소득 및 자본차익을 추구하며, 어음 및 채권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예: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)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 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.</p> <p>※ 변경전·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변 경 일</td> <td>변 경 전 위</td> <td>변 경 후 위</td> <td>위험등급 변경 사유</td> </tr> </table>	변 경 일	변 경 전 위	변 경 후 위	위험등급 변경 사유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6등급 : 매우 낮은 위험</p> <p>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 을 저위험자산(전자단기사채 및 어음) 에 투자하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이자소득 및 자 본차익을 추구하며, 어음 및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위험을 인지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 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</p> <p>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0.1007%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으로 분류되 입니다.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 게 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변경전·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변 경</td> <td>변 경</td> <td>변 경</td> <td>위험등급 변경 사유</td> </tr> </table>	변 경	변 경	변 경	위험등급 변경 사유	
변 경 일	변 경 전 위	변 경 후 위	위험등급 변경 사유								
변 경	변 경	변 경	위험등급 변경 사유								

		험 등 급	험 등 급		일	전 위 험 등 급	후 위 험 등 급	
2016.07.02	4 등 급	5 등 급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 정에 따른 투 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 편 (5단계 → 6단계)	2016.07.02	4 등 급	5 등 급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 정에 따른 투 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 편 (5단계 → 6단계)	
				2017.12.15	5 등 급	6 등 급	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 익률 변동성 (연환산) : 0.1007%	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투자위험등급	5등급(낮은 위험)	6등급(매우 낮은 위험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중 (2)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	<p>3. 투자위험 등급 분류 투자위험등급 : 5등급(낮은 위험)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저위험자산에 투자하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5등급(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이자소득 및 자본차익을 추구하며 어음 및 채권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 <u>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예: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)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3. 투자위험 등급 분류 투자위험등급 :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 이 투자신탁은 <u>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저위험자산(전자단기사채 및 어음)에 투자하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</u>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이자소득 및 자본차익을 추구하며, 어음 및 채권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0.1007%이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,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

